

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(안) 검토보고서

1. 주요 법적근거

○ 생활보호법

- 제37조 제1항 - 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제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년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○ 생활보호법 시행령

- 제29조 제1항 -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은 시·도에 설치한다.(개정 98. 7. 28)

2.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

- 생활보호기금 적립액 - 18,780천원('99. 3.11현재)
- 적립액 처리 -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으로 활용계획

3. 검 토 의 견

- 본 조례 폐지조례(안)은 생활보호기금을 도에 설치도록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